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4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1.

발 의 자 : 김도읍 · 이현승 · 장동혁
인요한 · 구자근 · 박성훈
신동욱 · 조지연 · 김형동
김예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같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시·도 교육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,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).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 제목 중 “지정”을 “설치·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전문인력 및 시설 등”을 “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·운영하거나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·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교육활동보호센터의 <u>지정</u> 등)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,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<u>전문인력 및 시설 등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9조(교육활동보호센터의 <u>지정·운영</u>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·운영하거나</u>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·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